

審 查 報 告 書

2001. 12. 22

총 무 위 원 회

1. 審 查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2001. 11. 20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2001. 11. 22

라. 上程日字 : 2001. 12. 22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文化會館長 朴永鎬)

가. 提案理由

- 現行 조례중 사용료 산출에 근거가 될 기준을 재정립하고 조례와 규칙 상호 불부합된 내용의 정비로 자치법규 각 조문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사용료납부 시기가 허가시 선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용 1일전까지 납부토록 조정함
-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5%를 사용료로 징수하던 할부 대관료 제도 폐지

- 냉·난방초과사용료 기준을 1회 초과시마다 30% 가산에서 1시간당 25% 가산으로 조정
- 사용시간기준을 1회 4시간(오전 09:00~13:00, 오후 13:00~17:00, 야간 17:00~21:00)으로 명시
- 부속설비사용료중 음향반사판 사용료를 1회 20,000원으로 신설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공공 공연장의 할부 대관료 징수제도 폐지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
 - 제7조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시 선납토록한 규정은 행정편의주의 사례로서 동조례 규칙과 같이 「사용 1일전까지」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
 - 동조 제2항 단서 조항과 제4항의 삭제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공 공연장의 할부 대관료 징수제도 폐지에 따른 것이며
 - 동조 제6항중 냉난방시설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드문일로서 「1시간단위」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
 - 동조례 별표중 「사용기준」개정은 오전, 오후, 야간의 시간개념이 명확치 않아 이를 보완한 것이며, 부속설비 사용료중 「음향반사판」을 추가한 것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하므로써 고가장비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.
 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5. 討論 및 小數意見 : 없었음
6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236 호
의 결 년 월 일	2001. . . (제 회)

서산시문화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1. 11 . 20.

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1. 20.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현행 조례중 기본시설사용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사용기준을 재정립하고 조례와 규칙간 상호 불부합되는 내용의 정비로 자치법규 각 조문의 내용을 일관성있게 일치시키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가. 사용료납부 시기가 조례상에는 허가시 선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규칙의 내용과 같이 사용 1일전까지 납부토록하여 상호 부합되게 조정함(안 제7조제2항).
- 나.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경우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5를 사용료로 징수하던 할부대관료 폐지(안 제7조제4항).
- 다. 냉·난방초과사용료 기준을 1회 초과시마다 30% 가산에서 1시간당 25% 가산으로 조정(안 제7조제6항).
- 라. 사용기준을 1회 4시간(오전 09:00~13:00, 오후 13:00~17:00, 야간 17:00~21:00)으로 명시(안 별지).
- 마. 부속설비사용료중 음향반사판 사용료를 1회 20,000원으로 신설(안 별지).

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입법예고 : 2001. 5. 16 ~ 6. 5. (주민의견 없음)
- 다. 기타서류 : 문화관광부 “공공 공연장 할부대관료 징수제도 폐지 요청(2001. 1. 30)”

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② 사용료는 사용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⑥ 회관의 냉난방 사용기준은 별표에 의하되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 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

가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 위 : 원)

구분		사용기준	평 일		토·공휴일	
대강당		오전(09:00~13:00)	60,000		80,000	
		오후(13:00~17:00)	80,000		100,000	
		야간(17:00~21:00)	100,000		120,000	
전시실	1, 2	오전, 오후 각 1회	15,000		20,000	
	3, 4		10,000		15,000	
소공연장 (조명사용료포함)		구 분	공 연	전 시	공 연	전 시
		오전(09:00~13:00)	30,000	20,000	40,000	30,000
		오후(13:00~17:00)	40,000	20,000	50,000	30,000
		야간(17:00~21:00)	50,000		60,000	
광 장		1일	90,000		100,000	

나. 냉·난방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시 설	기 준	사용료	비 고
냉·난방 사 용 료	대강당	1회	80,000	오전, 오후, 야간 각 1회로 본다
	전시실	1회	20,000	오전, 오후 각 1회로 본다
	소공연장	1회	20,000	오전, 오후, 야간 각 1회로 본다

다. 부속설비사용료

(단 위 : 원)

품 명		기 준	사용료	비 고
피아노	대	1회	50,000	오전, 오후, 야간 각 1회로 본다. 단,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	중	1회	20,000	
영사기		1회	30,000	상영횟수를 1회로 본다.
환등기		1회	10,000	
종합조명		1회	30,000	공연횟수를 1회로 본다.
일반조명		1회	20,000	오전, 오후, 야간 각 1회로 본다.
음향기구	마이크 1개		1,000	3개이상 사용시에 한한다. 오전, 오후, 야간 각 1회로 본다.
	무선마이크 1개		3,000	
	녹음기 1회		2,000	
	녹음료 1회		3,000	
	음향반사판		20,000	

라. 기타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사용료	비 고
영 화 촬 영	1회	10,000	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담함.
T.V 녹화료	“	“	“
T.V 중계료	“	“	“
라디오중계료	“	5,000	“
아취설치료	1건	10,000	“
현판및현수막설치료	1매	5,000	“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용료) ① (생략)	제7조(사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용료는 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에 의한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	② 사용료는 사용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5를 사용료로 한다. 다만,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.	④ <삭 제>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회관의 냉난방 사용기준은 별표에 의하되 1회 초과시마다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.	⑥ 회관의 냉난방 사용기준은 별표에 의하되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 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한다.